

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교육훈련의 대상·내용·시기 및 방법(제7조제1항 관련)

1. 대상	가.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등,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 나.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
2. 내용	가.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나. 최근 해적동향 및 해적행위 피해예방 정책에 관한 국제동향 다. 승선 해상특수경비원 및 해군 작전 관련 협조사항 라. 무기 사용 시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
3. 시기	가.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된 날부터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을 받을 것 나. 가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날 이후 매 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것
4. 방법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것 가.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강의 이수 나.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설명회 또는 세미나 등 참여